

1. 개정이유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경찰의 업무특수성 및 인재상을 고려하여 면접 평가요소를 재구성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안 제30조제1항, 제2항)

나.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추가(안 제3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같은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를 각각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여 50점(경력경쟁채용의 경우 60점) 만점으로 하며,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현장 대응 역량
3. 협업 역량
4. 인성 역량
5. 심리회복 역량
6. 경찰준법·윤리의식
7. 직무 전문성

제30조제2항 본문 중 “제4호까지”를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같은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같은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u>영</u> <u>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u> <u>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u> <u>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u> <u>시한다.</u>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u>영</u> <u>제25조의2</u> ----- ----- ----- -----.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 격자 결정) ① <u>영 제25조제1항</u> <u>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u> <u>“면접시험”이라 한다)은 25점</u> <u>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u> <u>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u> <u>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u> <u>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u> <u>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u> <u>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u> <u>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u> <u>따라 0점부터 5점까지의 정수로</u> <u>평가한다.</u>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 격자 결정) ① <u>영 제25조제1항</u> <u>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u> <u>“면접시험”이라 한다)은 제2호</u> <u>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u> <u>의 경우 같은항 제2호부터 제7</u> <u>호까지)의 평가요소를 각각 1점</u> <u>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u> <u>여 50점(경력경쟁채용의 경우 6</u> <u>0점) 만점으로 하며, 제1호의 평</u> <u>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u> <u>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u> <u>활용한다.</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u> <u>및 전문지식</u>	2. <u>현장 대응 역량</u>
3. <u>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u> <u>성실성 및 발전가능성</u>	3. <u>협업 역량</u>
4. <u>정보통신, 감식, 전산, 항공</u>	4. <u>인성 역량</u>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와 관련
된 특수기술 능력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평정요소에 대해 1점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생 략)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생 략)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5. 심리회복 역량

6. 경찰준법·윤리의식

7. 직무 전문성

② -----

----- 제6호까지(경력경쟁 채용의 경우 같은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 .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 채용의 경우 같은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 5. (생략) ③ (생략)	1.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또는 「<u>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u>」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